

1. 개정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 다. 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 마.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국방조달계약”으로 한다.

제4조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 각 호)를 “(법 제3조제13호 각 목)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나목은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체계지원요소”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양산을 위한 계약은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 : 1천분의 0.5 (다만,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법 제19조에 따른 구매 : 1천분의 0.75
3.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용역 : 1천분의 1.25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정한 제재 사유별 제재기간에 의거 가중기간을 합산하거나 제재기간을 감경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재기간은 월 단위로 정한다.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계약이행률 및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라. 법령을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아래 제2호 개별기준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마.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아래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기간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억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3년
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2년
라.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18개월
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1년
바.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6개월
2.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6개월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년6개월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개월
3.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실·부정한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1년6개월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나 부실·부정한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6개월
4.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급 비밀로 지정되거나 이와 상응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
나. 2급 또는 3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
다.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급 또는 3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거나 이와 상응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년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마. 무기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2년
5.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 2억원 이상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8개월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4) 1천만원 미만	8개월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강제 등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를 강요한 경우	6개월
5. 법 제5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5년
나.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4년6개월
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4년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년6개월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5년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용)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사전공개하거나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 등에 일체 응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단체, 개인, 업체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하도급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업체 등)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출 또는 대면보고를 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

하나, 나는 수행하는 직무가 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직무의 회피에 관하여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행동강령 책임자와 상담을 한 후에 처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공개하는 행위	
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바목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년
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바목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사전공개하거나 업체의 담합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등에 일체 응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단체, 개인, 업체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수행하는 직무가 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직무의 회피에 관하여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행동강령 책임자와 상담을 한 후에 처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방위사업 관련 정보(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도급자에게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감독 및 관리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상기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하도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공개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다른 업체와 담합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방위사업 관련 정보(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계약 체결 전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8. 상기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업체코드:)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신규
군수품무역대리업 [] 갱신 등록 신청서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		
전체 직원 수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변경등록 신청대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제68조의3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수품무역대리업 [] 등록, [] 변경등록, []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갱신등록 신청을 포함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나.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현황 다. 청렴서약서	수수료
	2.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인 경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방위사업청	→	검토 (필요시)	→	모원자료 요청 방위사업청	→	등록증 교부 방위사업청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라 한다)-----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④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 ----- 국방조달계약----- ----- ----- ----- ----- ----- ----- -----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 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 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 ----- ----- ----- -----.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u>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u>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 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 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 ----- ----- <u>위원회, 분과위원회, 방위사업</u> <u>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u> <u>약실무위원회</u> ----- ----- -----.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 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영 제 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 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u>영 제28</u> <u>조제1항 각 호의</u> 요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소요를 제출받 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 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 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 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 출 등) ①----- ----- ----- ----- ------(법 제3조 <u>제13호 각 목</u>----- 말하 며, 나목은 무기체계를 획득하 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 <u>정한다</u>----- ----- ----- ----- -----.

② (생 략)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①방위사업청장이 <u>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u>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①--- ----- <u>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지체상금률) ①<u>영 제61조의9제1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양산을 위한 계약은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및 동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 : 1천분의 0.5 (다만,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
--	--

	<u>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u> 2. 법 제19조에 따른 구매 : 1천분의 0.75 3.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용역 : 1천분의 1.25
--	--